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 회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 나. 장기 투자사업 소요재원 확보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낙동강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15% 총 75% 인상(안 별표 1)

-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원/m³당)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하수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2016. 4. 6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
- (2)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비 고
		2016. 11 월 고분 부터	2017. 11 월 고분 부터	2018. 11 월 고분 부터	2019. 11 월 고분 부터	2020.11월 고분 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220	250	290	330	380	
	21 ~ 30㎥ (2단계)	280	320	370	420	480	
	31㎥ 이상 (3단계)	610	700	810	930	1,060	
일반용	0 ~ 100㎥ (1단계)	400	460	530	600	690	
	101 ~ 300㎥ (2단계)	480	550	640	730	840	
	301 ~ 1,000㎥ (3단계)	600	680	790	900	1,040	
	1,001 ~ 2,000㎥ (4단계)	730	840	970	1,110	1,280	
	2,001㎥ 이상 (5단계)	880	1,010	1,160	1,330	1,530	
욕탕용	0 ~ 1,000㎥ (1단계)	610	700	800	920	1,060	
	1,001 ~ 1,500㎥ (2단계)	710	810	930	1,070	1,230	
	1,501 ~ 2,000㎥ (3단계)	830	950	1,090	1,260	1,450	
	2,001㎥ 이상 (4단계)	940	1,080	1,250	1,430	1,650	
산업용	㎥당	360	420	480	550	63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6조제2항)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금(원)	구분 업종별	단 계 별	요 금				
					2016. 11월 고지분 부터	2017. 11월 고지분 부터	2018. 11월 고지분 부터	2019. 11월 고지분 부터	2020. 11월 고지분 부터
가정용	0 ~ 20㎥ (1단계)	190	가정용	0 ~ 20㎥ (1단계)	220	250	290	330	380
	21 ~ 30㎥ (2단계)	240		21 ~ 30㎥ (2단계)	280	320	370	420	480
	31㎥ 이상 (3단계)	530		31㎥ 이상 (3단계)	610	700	810	930	1,060
일반용	0 ~ 100㎥ (1단계)	340	일반용	0 ~ 100㎥ (1단계)	400	460	530	600	690
	101 ~ 300㎥ (2단계)	410		101 ~ 300㎥ (2단계)	480	550	640	730	840
	301 ~ 1,000㎥ (3단계)	510		301 ~ 1,000㎥ (3단계)	600	680	790	900	1,040
	1,001 ~ 2,000㎥ (4단계)	630		1,001 ~ 2,000㎥ (4단계)	730	840	970	1,110	1,280
	2,001㎥ 이상 (5단계)	750		2,001㎥ 이상 (5단계)	880	1,010	1,160	1,330	1,530
욕탕용	0 ~ 1,000㎥ (1단계)	520	욕탕용	0 ~ 1,000㎥ (1단계)	610	700	800	920	1,060
	1,001 ~ 1,500㎥ (2단계)	610		1,001 ~ 1,500㎥ (2단계)	710	810	930	1,070	1,230
	1,501 ~ 2,000㎥ (3단계)	710		1,501 ~ 2,000㎥ (3단계)	830	950	1,090	1,260	1,450
	2,001㎥ 이상 (4단계)	810		2,001㎥ 이상 (4단계)	940	1,080	1,250	1,430	1,650
산업용	㎥당	310	산업용	㎥당	360	420	480	550	630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효율이 높은 업종의 효율을 적용함.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 ③ 생략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
2.29>

소관 실 · 과		업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꼭 인 태
	담 당	나 동 식
	담 당 자	이 상 두 (480-4432)